

용역 긴급발주 사유서

□ 용역 사업 개요

용역 사업명	소요예산(백만원)	용역기간
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조사 및 분석	380	계약체결 후 2022년 12월 16일까지

□ 추진근거
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(관련 통계의 작성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(신·재생에너지통계의 전문기관)
-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
- 신재생에너지설비·연료산업조사 통계작성 작성승인 고시(통계청 고시 제2015-378호)

□ 긴급발주 사유

- 본 용역의 주요 업무는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(국가승인통계 제337004호)의 공표를 위한 조사 및 분석으로서, 해당 통계는 통계법 제27조(통계의 공표)에 의해 사전 승인받은 공표일정(매년 11월)에 맞추어 통계결과를 공표해야함.
- 공표일정 준수를 위해 조사기획(모집단 추가, 조사표 변경 등)을 6월까지, 최소 5,000여개의 조사모집단 조사를 10월까지, 조사결과의 검증 및 최종 통계결과 도출은 11월까지 완료하여야 함
- 이에, 통계 공표 일정 및 용역 수행기간을 고려해 볼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한 진행이 필요한 바,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2호(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)에 의거하여 본 용역을 긴급으로 발주 요청함

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이 상 훈

